

서울특별시물류정책위원회최초배중개정안 검토보고서

1. 제안경위

- 가. 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- 나. 의안번호 : 제 250 호
- 다. 제출일자 : 2003. 6. 9
- 라. 회부일자 : 2003. 6. 11

2. 제안사유

- 지방자치법시행령·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 및 부시장사무분장규칙의 개정여 따라 물류정책위원회의 위원장 및 기관명을 관련규정에 적합하도록 변경하려는 것임

3. 주요절차

- 가. 물류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을 행정(2)부시장에서 행정(1)부시장으로 변경함(안 제3조제2항)
- 나. 물류정책위원회의 위원 중 산업경제국장→산업국장, 건설국장→건설기획국장 등으로 변경함(안 제3조제3항1호)

4. 참고사항

- 가. 근거법령 : 지방자치법시행령·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 및 서울특별시부시장사무분장규칙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기 타

- (1) 찬·구조론대비표 : 별첨
- (2) 일반제고 : 서울특별시자치법규입법및운영여관한조례 제4조 제1호의 규정여 의하여 생략

5. 검토의견 (전문위원 : 임 명)

- 서울특별시물류정책위원회최초배중 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.
 - 동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2003. 6. 9. 의회에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250호로 2003. 6. 11.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 - 동 조례안의 제안사유는 서울특별시 물류정책시행위원회 위원장의 직명을 현행 부시장의 사무분장에 적합하도록 변경하는 등, 지방자치법시행령·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 및 부시장사무분장규칙의 개정여 따라 개정된 내용에 맞추어 조례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.
 - 서울시에서는 2003. 1. 10 교통업무를 행정2부시장에서 행정1부시장의 사무로 분장하고 교통관리실을 교통국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경영시장을 위한 조직개편안을 마련하여 시행한 바 있음.
 - 당시 부시장의사무분장변경안에 대하여는 근거법규에 위반되어 논란의 대상이 되었으나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(2003. 4. 4)으로 근거가 마련되었으므로 개정내용에 맞추어 관련 조례규정을 정비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 - 다만 교통업무를 행정(1)부시장 사무로 분장한 사항에 대하여는, 교통업무가 건설, 도시계획, 주택 등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합리적 업무조정과 부서간 원활한 협의를 위하여는 행정(2)부시장의 사무로 분장하는 것이 조직의 효율성 증진을 위하여 타당적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시행 성과를 분석하여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됨.
-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물류정책위원회최초배중개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서울특별시물류정책위원회최초배중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물류정책위원회최초배중개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